

제3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2. 7. 2(월), 15: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박윤규 의원, 이순일 의원, 이제호 의원, 이강준 의원, 이효철 의원, 임정민 의원, 이흥평 의원, 김진우 의원,
- 총 13명 중 9명 참석 : 강희진 의원, 조중열 의원, 윤갑희 의원, 윤성승 의원 불참

의장 강명구 : 총 13분 중 9분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하셨기에 제38차 아주대학교 대학 평의회 201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교과부와 아주대학평의회 사이에 법정부담금 문제로 소란스러웠습니다. 2012학년도 1월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비로 부담 시 재정여건개선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대학평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얻은 결론은 아주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재정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부 관료가 저에게 설명해준 바로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법정부담금을 완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2013년도 결산 자문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금을 6억 9천 증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자문사항으로 1차 추경(안)이 있고, 심의사항으로는 학칙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사항으로서 건축위원회 참여 관련

< 간서명 란 >

의 장 

해서는 후에 설명 드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시작하기 전에 결산 자문 시 부탁드렸던 것에 대하여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자문 날짜에 대해서 미리 정해 못박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날짜가 정해졌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은 예결산 자료를 받을 때마다 매번 형식이 달라서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늘 같은 형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동일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본교, 의대, 기금, 등록금 회계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1차로 제공하신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요청하여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는 수정된 자료를 받았지만, 오늘 보니 다른 평의원들께는 동일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제가 받았던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가지 지적한 점을 기획처장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자료는 반드시 이번과 같은 형식으로 준비해주시고, 또한 예결산 자문 날짜는 미리 정해서 조속히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날짜를 정하셨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나, 가능하면 미리 날짜를 정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의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교와 의대는 교비회계로 통합되므로 교비회계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수립 시에는 본교와 의대를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올해까지는 본교와 의대를 구분한 자료를 드리겠으나, 내년부터는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의 형식은 본교와 의과대학의 형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예결산 양식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결산 자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의 형식을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분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와 같은 형식이 편하고 좋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내년 이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아주대학교의 교비회계를 통합해서 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의대 간에는 실질적으로 관리와 운영에 있어 분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 간서명 란 >

의장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수입으로 의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본교가 의대생에게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부분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비용 등이 있지만 서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의대 또한 아주대학교이므로 교비회계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가 세브란스병원의 포뮬을 따와서 출발하여 의료원(의대포함)과 본교가 구분되는 형태가 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점진적으로 본교와 의대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쉽게 통합 관리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까지는 의대 예산이라고 나누어 설명 드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서로 정서적인 부분 어려움이 있으나 그런 문화는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며 의대의 발전이 아주대학교 전체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토지 구분 등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료원이라고 하는 회계, 행정체계를 따로 만든 채 20여 년간 운영해 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만으로 이 사안을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호존중하면서 이전에 대해서 절충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가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의 법정정부담금 처리라는 현안이 발생하면서 그것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이 이슈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재단의 법정 전입금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과 관련되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꼬리가 본체를 흔드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올해까지는 이런 양식의 자료를 주시지만 내년부터는 단일 자료를 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대, 병원, 본교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금 운영이 완전히 구분되어 왔습니다. 결산 시 계좌잔고도 양쪽이 완전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쪽 회계가 통합이 된다면 단일 자료 제공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한 자료를 실제에 맞게 제공해주시기

< 간서명 란 >

의 장  -3

바랍니다. 예결산 자문을 하는 목적이 대학과 병원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있는데, 당위성을 명분으로 자료의 형식을 바꿔 놓으면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의 양식을 바꾸는 시점을 정함에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공식적 자료는 교비 회계가 통합 관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참고자료로 본교와 의대를 구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본교와 의대가 통합된 교비회계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도 자료를 통합 작성하여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장 강명구 : 본교와 의대의 관계는 미묘하지만 발전을 위하여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결국은 중간에서의 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대와 본교 간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법인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차 추정인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김민구 기획처장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의장 강명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기획처장님 나오셨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에서 나중에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상비 전입금이 6억9천이 줄어드는데요. 의과대학의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은 병원 지하상가 임대료가 채단으로 전출되었다가 전입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억 9천의 경상비 전입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의 결정에 따르는 내용이니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같은 액수인 6억9천이 의과대학 외의 부분에서의 법정부담금의 증가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법인의 결정에 따라 경상비를 줄이고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본교 22억, 의대 28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대로 전출되는 법인경상비전입금이 본예산에서는

< 간서명 란 >

의장  -4

30억인데 추경에서 23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6억9천, 약 7억 정도 경상비 지원이 줄었죠. 법인이 의대로 법정부담금 100% 이상을 지원하면서도 본교의 법정부담전입금은 부족했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100%를 준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지하에서 나온 임대수익은 의료원으로 다 쥐야하는데 왜 본교로 6억9천을 지원해주었는가 하는 말씀이신가요?

평의원 이재호 : 쥐야하는 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의료원 대표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6억9천이라는 액수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6년 이상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국 의과대로 가는 법정전입금하고 경상비전입금 액수 의합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임대료 수입과 같은 액수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획처장 김민구 : 대부분은 그랬었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은 나중에 3년 동안 지적이 되어서 총 17억에 해당하는 것을 의대에 돌려준 적은 있습니다. 결국은 상호 이해되고 불문율로 그렇게 정착되어 있었던 뜻이죠.

기획처장 김민구 : 과거에 제가 기획처장 했을 당시에 더 받았던 적이 있는데 다시 환원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어 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두 개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지하의 임대수익은 전액이 의대 경상비전입금 및 법정전입금으로 그대로 전입되어 왔습니다. 일전에 자문한 본예산도 그렇게 작성됐었는데, 1차 추경예산 자료에 의하면 갑자기 의대 경상비전입금이 6억9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임대수익이 전액 의대로 갔느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법인이 부담해 온 액수는 본교와 의대에 해당하는 전체 법정부담금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번에 법정전입금과 경상비전입금 항목에 변동이 있는데, 과연 법인이 실제 의대와 본교에 주는 법정 및 경상비 전입금에 순증이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 5 -

기획처장 김민구 : 없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의대는 100%를 주고 본교로는 100%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넘어온 것이죠.

평의원 이순일 : 갑자기 경상비전입금이 6억9천만원 감소해도 의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는 6억9천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의 예산 규모가 4천억이 넘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병원인가요? 의대인가요? 6억9천만원이 빠져도 의대 운영에 문제가 없단 소리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건 아닙니다. 의대의 6억9천은 병원의 6억9천에 비하면 크지만 의료원으로 볼 때는 6억9천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법인전입금을 학교 전체를 봤을 때 어떠한 지출로 편성 하였는가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현재 본교에서 의대의 기초교육비용과 전기료 등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포인트는 재단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학교 교비가 의대와 구분되어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본교가 6억9천을 받아서 예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 늘었는가를 보시면 되겠죠.

평의원 이순일 : 제 질문의 요지는 의과대학 예산에서 6억9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의과대학의 정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억9천만원이 원래 예산에서는 어떤 용도의 돈이었는데 빠졌는지 파악해보셨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돈을 의과대학에서는 어디선가 빼서 써야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인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의대에서 지출하는 부분 중 전기료나 용역비 부분과 관련하여 본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억 정도가 이월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억9천이 줄어들어도 본교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까지는 본교와 의대를 철저히 구분해서 운영했으나 이제는 통합하여 운영해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평의원 이순일 : 예전에는 의대가 부담하던 것을 본교가 떠맡은 부분에 대해 항목과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부분을 상세히 구분하여 따지게 되면 의대와 의 분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이나 기초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비용을 본교가 의대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본교의 법정부담금을 재단이 6억9천만원 더 부담했다. 그런데 원래는 의대의 경상비전입금으로 가야하는 6억9천만원을 본교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의대가 결제하던 비용 중 일부를 본교가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 경우 본교가 1억원을 지불한다면 사실은 학교가 떠안지 않아도 될 1억을 더 떠안게 된 것이니, 재단이 본교에 더 준건 6억9천만원이 아니라 5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실제 돈을 더 준 게 없이 의대로 갈 돈을 본교에 주었다면, 그건 그저 형식상만 보기 좋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이순일 교수님이 핵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의대에서 지출하고 있었던 청소용역비를 본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3억9천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3억 정도는 본교가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원과 비용적 측면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학교 전체의 발전 차원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의대와 본교가 다룰 이유가 없다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단이 6억9천만원을 더 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재단이 부담하는 총액은 같습니다. 법인에서는 경상비를 빼서 법정부담금을 더 준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교비회계라고 하는 데서 얼마만큼을 쓸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재단에서 법정전입금 부담이 일부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비에서 지원했었는데, 2012학년도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 간서명란 >

의장  - 7

그 문제 해소를 위해 명목만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럴 수도 있고요. 본교 입장에서는 법인은 의대에 100% 법정전입금을 지원해 주면서 왜 본교에는 100%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의대에 왜 경상비를 지원하는가의 문제를 법인에 여러 번 여쭙보았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의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 돈은 의료원에서 전출된 금액이며, 그 액수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전제 하에 전출된 것이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기는 하지만 병원을 만들 때에 본교가 토지를 제공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평의원 이재호 : 기획처장님께서 의료원과 본교 사이의 계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단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획처장 김민구 :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재단이 돈을 더 지원해주면 좋죠. 이번 추경에서 법정전입금하고 경상비의 total 금액은 똑같은데 경상비를 줄이고 법정부담금을 더 주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올바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에 법인의 전입금을 늘리는 노력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계속 더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인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법정전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법인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꼬리표가 달려야 아는 것인데...

이재호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다시피 법인이 법의 취지가 어긋나게 하면서 본교와 병원 사이에 분란을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에게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올해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이 37억입니다. 맞죠?

기획처장 김민구 : 네

평의원 이순일 : 1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되는 6억9천을 더해봐야 들어온 법정부담전입금은 22억입니다. 맞죠? 15억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6억9천이 늘어나도 15억이 안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평의원 이재호 : 법인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평의원 이순일 : 아직도 15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주는 총액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6억9천이라는 숫자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요구하는 재정개선계획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에서 나온 금액인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사학연금부담액에 따라서 보면 6억9천이 그 해당액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실제 아주대학교 입장에서 사정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재단에 좀 더 전향적으로 처리하도록 종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과 본교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사학연금에 대해서 맞게 내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편법으로 법인이 해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단이 낼 돈이 없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국 재단이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하지 못함에 따라 교비 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의료원과 본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3억 만원을 본교에 기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본교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드러나지도 않죠.

기획처장 김민구 : 실제로 아주대학이 공과대학으로 출발했고 의료원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본교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원과 서로의 입장에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의대이므로 가능한 의대를 발전 시키고자 하였지만 본교의 교수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철골주차장 얘기를 하면 그것을 왜 쥐야 하느냐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계산하여 따지자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교와 의대 교수님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사람마다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번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동안 해 온 것에 비추어보면 진전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notice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012학년도에 3억원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비 전입금을 의대에서 7억원을 줄이고 법정전입금을 본교에 늘린 것에 대하여 그것은 재단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설명하신다면 이 일의 근원은 재단인데, 재단이 내야할 것을 내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대와 본교 사이의 갈등이 생기고 의대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notice가 되지 않는 이중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료원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notice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렇다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학교 회계자료의 이런 처리방식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처리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료의 3페이지를 보시면 본교는 시설용역비가 4억7천8백인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의대의 시설용역비를 보면 2억8천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처리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할 때, 전년도 대비 몇% 인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여기 시설용역비 4억7천 오른 것의 또 몇%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 중에 4억7천이 늘어난 이유 중에 2억8천은 의대 것을 대납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은 이것의 몇% 증액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억하신다고 하지만, 내년 예산 편성 및 등록금협의 실무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그렇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계정에 따라 재원을 함께 표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어떻게 되든 지출이 4억8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의대 2억8천이 줄어든 것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숨은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만들 때 모든 항목을 상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자료를 유심히 보면 알 수는 있고 지금도 제가 기록에 남는 말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의대의 건물에 전기료 납부에 대한 것은 어떠한 자료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제가 명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알게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에 남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6억9천이 장부상으로는 옮겨졌으나 기장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본교의 시설용역비는 어쨌든 증액된 것으로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장 강명구 : 결국은 법정전입금 때문에 의대에서 이게 왔는데 의대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보전을 해줘야하고, 원래 법에서는 법인이 그것을 내라 만약 못 낼 것 같으면 자문을 구해라 하는데 자문도 구하지 않고 이리저리 숫자만 옮기면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순일 교수님께서 제기하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문제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국 재단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역추적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법인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더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왔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지난번에 평의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구두로 답변이 왔고 앞으로는 문서로 주실거라 합니다.

의장 강명구 : 교과부 관료에게 들은 얘기에 따르면 재정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발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고 하면 법의 원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

< 간서명란 >

의

장  - 11 -

제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법인에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예비비 부분에 있어 우리 학교 규모에서 예비비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짰다고 한다면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다 들어있어야 정상입니다. 예비비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의 예비비 편성은 괜찮은데 추경에서 예비비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추경에서 요구한 예비비 증가만큼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용도 별로 각각에 맞는 항목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편성을 했고,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진행 할 때부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전체 규모 대비 적절한 예비비의 비율이 얼마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를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 2천2백억 규모에서 예비비를 10억만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크게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예비비를 잡은 것이라면 이순일 의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 기억에는 지금 처장님께서 이전에 기획처장을 하실 때 평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비비가 적정한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는 1%를 잡는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학교는 0.5%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10억을 잡고, 쓰고 나면 계정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3억7천을 또 잡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억7천이라는 명확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과거 1%의 예비비 편성에 대한 권장 조항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가 계속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12 -

평의원 이순일 : 회의록을 찾아봐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과거에는 0.5%가 적절하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추경에서 예비비를 늘리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특임교원 퇴직금 지급의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 대상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고려해서 해당 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퇴직이 발생할 때에 퇴직기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3월에 외국인 특임교원을 비정년 외국인 교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여 급하게 그 부분을 예비비로 처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퇴직기금을 인출하여 해당 퇴직금을 대체 처리하고 그 해당액만큼을 예비비로 환원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작년에 명시 이월 할 때 보면, 교원보수 항목도 이월이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잡는다고 하고, 결국은 교원보수를 이월한다고 하면?

의장 강명구 : 지적사항은 참고로 하시고요. 교과부에서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라고 한 게 3월인데 2월부터 벌써 법정부담금은 지급이 되었죠? 2012년 1월에 법 개정이 되었고 2012년 2월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이 돈을 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3월에 공문을 받긴 했으나 법 개정은 1월에 되었고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2012년 2월의 금액도 교비대납이 아니라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은 2월에 입금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런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2011년도 결산할 때는 2012년 2월분 교비 대납한 것을 갠 것만큼의 추가수익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조정숙 : 2월 한 달분은 저희가 9억5천만을 받았는데요.

평의원 이순일 : 세상에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평의원 이제호 :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인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습

< 간서명 란 >

의장  - 13

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의 입장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남기셔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법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을 법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자료 7페이지에 글로벌 엑셀 사업 관련하여 해외대학방문 출장비가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총장님도 가시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총장님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가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수가 상대 대학 교수와 강의를 협동해서 하는 등의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해외 출장을 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엑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이는 실질적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번 타 대학 방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팀당 2인 정도 1회에 한하여 협의차원의 방문을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비나 발전기금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조지 메이슨 대학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조지 메이슨 대학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긴밀한 접촉이 되지 않아서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스톤이 브룩과 조지 메이슨 대학을 같이 방문하려고 하나 아직 긴밀한 접촉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질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이월수입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이월한 것을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일반관리비를 이월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차기이월자금이 우리학교의 예산 사항을 파악하는데 난점이라고 하여서, 합의하여 명시이월내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내역에는 없던 항목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대학특별사업 대학중점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경비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학생경비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글로벌엑셀 사업이 그

< 간서명 란 >

의 장 

때 드렸던 시점과 중점추진과제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
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에서 돈이 남으면 이월해
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항목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경비
로 쓰겠다고 한 부분을 일반관리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교수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차기 이월을 하는데 디테
일하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확정적으로
이월하는 전체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각부서의 내역을 피드백 받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곤란합니다. 결산 시점에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정확하지 않다기 보다 그 당시 그 시점에 각 부서의 예틀
들어서 실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CE사업이 1억9천이 이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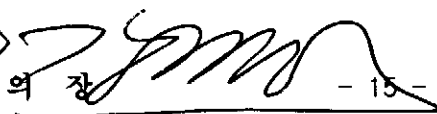
그 사업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닙니다. 대학특별사업 대학중점
추진사업을 학생경비로 분류하셨습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저희한
테 주신 결산 자료에 꼬리표를 붙여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용전기이월
자금 증감에 대학중점추진사업비 미집행 전기이월이 3억천만원이 늘었습니
다. 액수도 달라지고 내역도 달라지면 명시이월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
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때 자료를 만든 그 시점에는 결산자문에 있어 참고하신
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식적인 자료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부서마
다 전체금액으로 이월을 하는 것이구요. 모든 계정과목을 어떻게 쓰겠다 하
는 것은 결산 시점보다는 추경하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자료
를 만들기 위해 각 부서의 내역을 확인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거쳐야 최종확정이 되는 거라고 했지만 평의원회 요청으로 급하게
만든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맞춰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팀장님과 저의 예결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 간서명 란 >

의 장  - 15 -

는 장부는 한번 작성되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꼬리표를 단 명시이월 내역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명시이월을 꼬리표를 다 붙여서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한 단계 위로 가면 좀 더 융통성이 있었을 텐데 이월자금이라는 것을 세부내역까지 꼬리표를 붙여서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월한 관 수준으로 맞추어서 쓰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생각지 못했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받아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

평의원 이재호 : 리서치 펠로우 제도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요. 리서치 펠로우가 유급 혹은 무급이면서 연구비를 재원으로 지원받는 분들을 리서치 펠로우로 임용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학교에서 추가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지난번에 리서치 펠로우 선발 시에는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연구지표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교의 지표를 올리고 우리 학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연구지표를 올리려면 교수와 대학원생이 중요한 데 그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리서치 펠로우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이 리서치펠로우 A 타입이라면 이번에는 리서치 펠로우 B 타입으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완성이 되면 최대 50:50으로 매칭 하여 우수한 인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명까지는 우수한 리서치 펠로우를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면 연구역량이 top10안에 못 들어갑니다. 연구역량을 top1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올해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생각하여 2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보시면 투자 자산 지출 20억이 있습니다. 새로 주신 자료 4페이지 보면 20억 투자 자산

< 간서명 란 > 
의 장 - 16 -

지출 예산에 대한 항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기타투자자산으로 되어있고 추경에서 보면 유가증권매입비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달라진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기타투자자산 항목 안에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외부로부터 유치하여 그 금액을 차기이월하게 되면 외부인이 봤을 때는 이월액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언젠가는 내주어야하는 돈 이어서 이 금액을 1년 이상 트리플 A 국공채로 직접 매입을 하여 1년 정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여 항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하여튼 안정성 위주로 해주시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이것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찌서 재단이 그동안 의과대학에는 법정전입금 + 경상비 전입금까지 주면서 본교에는 법정전입금까지도 적게 주었는가의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여 얘기하자면 법인은 그동안 의료원에 한 푼도 전입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입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돈은 의료원에서 전출된 금액이므로 의료원은 재단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본교는 일부 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정확한 표현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의료원이 지고 있는 빚은 재단이 갚아줬지만 학교는 반대로 갚지를 못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병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투쟁을 하여 얻어낸 것이고, 본교는 투쟁을 하였으나 당시 총장인 김덕중 총장이 그냥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투쟁을 해서 재단에서 건물을 팔아서 313억을 받았고...

평의원 이순일 : 본교는 78억 한 푼도 안 들어 왔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문제는 재단에서 들어오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문제는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학교와 협의해야 하는 것인데 숫자늘음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문제죠.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도 돈을 안주고 싶어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본교에

< 간서명 란 >

의장  - 17 -

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도 주고 싶겠죠.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코이카 관련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돈이 더 들어온 것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수입이 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웨딩컨벤션 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발전본부에서 의견을 낸 것인데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도 하였으나 체육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총무처 소관이지만 종합관 12층의 식당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12층에 음식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중앙대 입점업체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가보니 아직은 부족하지만 잘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오늘 핵심 사항은 법정전입금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의과대학의 경상비 전입금은 구두상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병원 지하의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이런 구조는 나중에도 분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정조항이 바뀌어 6억9천만 원만 움직이지만 또 필요성이 생기면 또 손을 대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만약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교와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8페이지 연구조성연구비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억6백만 원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18

예산팀장 조정숙 : 연구팀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접비를 전입 받아서 학교의 전반적인 연구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교내에서 신입교원들에게 3천만 원, 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착연구비가 있고 교내 연구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구의 경우는 올해 3천만원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업을 2년 이상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연구기간을 2년을 둡니다. 3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올해 천만 원 사용하면 내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결산금액에서 진행하고 있던 연구비에 대하여 이월하였고 이것을 연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수원발전센터 연구비가 증가했는데 수원발전연구센터를 개별 연구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사실입니다. 올해까지만 있고 기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수입대응해서 지출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주대가 수원시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수고 많으셨고요. 이메일로 예결산 자문에 대한 부분의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두 번째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시지요.

[김승권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의장 강명구 : 계약학과가 어떤 것입니까?

간사 김승권 : 계약학과는 재교육형과 채용 조건형으로 나누어지며 정원 외로 입학합니다. 재교육형은 기업과 협약에 의해서 기업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학교와 협약해서 되는 것이고 채용 조건형은 채용조건을 보장하고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명구 : 다양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학칙이 규정류

< 간서명란 >

의  19 -

보다 하위에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칙이 정관보다 아래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 필히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44조의2(전공진입)의 부칙을 보면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경과규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간사 김승권 : ACE에서 미리 공포한 것이고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특수대학원에 산업대학원을 공학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의원 이강준 : 전국에 산업대학원이 170개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산업이 예전의 야학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여 글로벌, 첨단, 융합, 테크노대학원 등으로 70%정도 변경되었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거쳐서 공학대학원으로서의 변경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인원은 꼭 찹니까?

평의원 이강준 : 석사는 거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과정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의장 강명구 : 추가 의견이 없으면 학칙개정 심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일 동 :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마지막으로 논의사항 건축위원회 참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번 37차 대학평의원회 때 두 가지 (안)을 제시하여 하나를 채택하였습니다. 국제학사 125억짜리 지을 때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김민구 처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3인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명 정도 외부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내부위원회여서 외부인들이 참여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명을 2명으로 해달라고 하여 일단 시작하자고 하여 교수회 총무로 계신 김상배 교수님과 건축학과 김장훈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중에 임정민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원래 3명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여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여서 일단 2명을 보내고 나중에 1명을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

< 간서명 란 >

의 장  - 20 -

려서 안전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요구하여서 3인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학생위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김상배 교수님이 과거 학생처장을 지내신 바 학생의견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셔서 학생대표가 못 들어가도 참여하는 것처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얘기하였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당연직은 누가 계신지 여쭙봐도 됩니까?

간사 김승권 : 당연직은 없고 기획처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교내 전문가 분들과 두 분 교수님과 기획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의원회에서 3명이 가거나 동문이나 교수회나 학생회 측에서 2명씩 가거나 학생이 2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처에 3월에 요청한 바에 따르면 1/3로 요청했습니다.

간사 김승권 : 공식적으로 건축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3월 29일 학생총회에서 의견을 전달 드렸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설사 선정위원회에 학생이 1/3로 구성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9명 중 3명은 모르겠는데 4명이 들어가게 될 경우 12명이 구성되면 유동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1/3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2명 정도는 들어가도록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연락을 못 받은 상태로 학생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교수님들만 두 분 들어가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워서 안전 상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임정민 의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국제학사를 먼저 지어야 하는가 기숙사를 먼저 지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논의한 바 있으며 국제학사를 지으면 될 수 있으면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넣어야한다는 비율도 논의했습니다. 기숙사가 시급하니 국제학사만 짓지 말고 기숙사 한 동 더 같이 짓자는 논의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학생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김상배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대표들이 참관을 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21 -

간사 김승권 : 건축위원회는 학교 전반적으로 건물을 신중축할 때 논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숙사를 지을 때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임정민 :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학생이 참여하는 부담 가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의장 강명구 : 건축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시공사 선정에 대한 모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축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당성을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회는 처장이 발령을 내는 것인가요?

간사 김승권 : 위원회 위원의 최종 결정은 총장님 결재 사안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만들면서 나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평의원 임정민 : 요청사항으로는 학생대표자 2인 이상 의결권을 가진 참가로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대표 2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첫째는 교수대표 2명 동문 2명 학생 2명의 총 6명 안이었고 둘째는 대학 평의원회가 총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안이 있었는데 기획처장님이 3명의 위원 추천 안으로 내부 위원으로 해달라고 하셨다가 처장회의에서 설왕설래를 거쳐 2명으로 줄어졌고 일단 임시적으로 수용한 상태입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평의원 김진우 : 건축위원회 구성이 처장이 위원장이고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12명 중에 평의원이 추천한 분이 2분이신 거죠?

평의원 이홍평 : 건축위원회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생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의원 김진우 : 발주를 주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것은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시공사를 정하겠다는 시공사선정

< 간서명 란 >

의장



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전반적 프레임은 짜는 것이 건축위원회의 일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발령을 처장이 내는 것이라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실어주다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평의원회에서 논의하면 다 지나간 다음에 논의 하는 것이라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학생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들과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문서상으로 학생총회 때 의견을 제시했고 총장님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시길 학생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김승권 : 지난번 회의 시 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관을 하는 것으로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학생회 측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보고 의견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단지 발령을 내는 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기숙사에만 한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참관의 목적이 있으므로 한 건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박의원님 말씀은 학생의 참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찬성의견입니다. 교수 대표가 2명인데 학생 대표 1인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평의원 박윤규 : 건축은 따로 할 말이 있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의 활용 등의 의견이지 거기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효철 : 병원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죠? 이 건축위원회는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죠? 이번에 병원에서 짓는 철골주차장은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대장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입찰방식을 정해서 하니까 제가 입찰하여 철골주차장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하면 아주대학교니까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의장님이 교수님 두 분을 추천하셔서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 간서명 란 >

의 장  - 23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학생처장님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보다 학생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전공이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교수님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선배님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교수님께서 학생처장을 했고 교수로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교수로서의 전문지식은 아니고 학생처장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demand가 뭔지 잘 아시기 때문에...

평의원 임정민 : 학생들의 demand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평의원 대표로 교수님 두 분이 가셔도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분들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도 건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두 가지의 조건을 완화해서 참여에 비중을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지난번 얘기했던 옵션2에서 3분을 추천하기로 했었는데 임시로 회의가 진행되어 2명을 했었는데 학생대표 1인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학교 측에서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면 참관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렇다고 하면 의결권 가진 의원을 한 명 요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참관하는 학생들을 2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안을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승권 : 이 부분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학생이 두 명 정도 와서 참여하는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에 있어서 위원회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어차피 공개하실 부분이니 처장님과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어차피 표결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분 좋게 표결이 있는 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24

의장 강명구 : 의결권 있는 학생대표 1인을 모시는 것이고, 추가로 참관인을 학생 2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만약 참석이 어려우면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까?

간사 김승권 : 대리출석은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처장회의 및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임정민 : 옵션을 2개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안은 의결권 있는 학생대표 2인이 참가 하는 것이고 2안은 의결권 있는 학생대표 1인 + 참관인 2명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1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수대표가 2명입니다. 2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평의원회의 의결내용이 2인 2인 2인 또는 3인이었으므로, 안을 재의결 하는 것이 아니라 2안을 생각해보심이 맞다고 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직원의 경우는 전문가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학생 부분은 사전에 한번 연락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다 보니 교수회에서 교수 2인을 추천하였으나 학생대표를 미리 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연락을 못한 것은 제 실수라고 봅니다.

평의원 임정민 : 학생들이 참석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었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장 강명구 : 서운하시더라도 좀 양해 바라며...

평의원 박윤규 : 학생 1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으로 평의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임정민 의원이 의결권 있는 학생대표 2인을 넣어야 한다고 고집하신다면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제 의견으로 보자면 학생들이 상세한 건축위원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의원으로의 참가보다는 알 권리를 충족하기위하여 참관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고 1인이 의결권을 가지고 의원으로 참가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나름의 의견이 있겠으

< 간서명 란 >

의 장  - 25 -

나 한명 정도 참여도 흠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이의가 없으시다면... 임정민 의원 말씀하시죠.

평의원 임정민 : 10명중 당연직으로 분류된 것도 맞지 않다고 본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교수님들 2명이 들어가서 12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분들이 전부다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간사 김승권 :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건축, 토목 전공 교수,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 기획처장, 관련 팀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일단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하시죠. 시공사 선정, 설계사 선정 등 기본 프레임을 잡는 작업이므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밖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렇다면 의결권 가진 학생 1인과 참관이 가능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소집되면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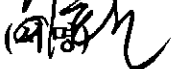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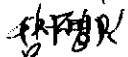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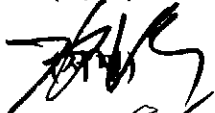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정리하자면 학생대표 1인 추가 및 참관인 2인 추가 하는 것으로 처장님에게 보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임정민 : 의장님께 앞으로는 종종 연락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매번 오시라고 하여 외부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6

2012년 7월 2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홍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기 록	김승권	(서명)